

정책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농림부고시 제2005-17호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 2003-27호, '03.6.1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육 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식육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

는 잔류물질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또는 혈청 시료를 채취하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경우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나.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관 또는 자체 검사원이 도축시 도체의 근육 등을 채취하여 지육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2. “규제검사”라 함은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또는 긴급도살, 화농, 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검사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탐색조사 결과는 차후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4.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

라 한다)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검사대상품목) 국내 도축장에 출하되었거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를 포함한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검사기관별 업무 등) <삭 제>

제2장 잔류물질검사

제6조(잔류물질 검사구분)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검사 :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2. 규제검사

3. 탐색조사

제7조(잔류물질 검사항목) ① “모니터링검사” 항목은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세부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 항생물질, 설파제 등

2.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② “규제검사” 항목은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하여 페니실린, 암피실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설파메라진, 설파퀴녹살린, 설파모노메톡신 및 엔

로플록사신을 포함하여야 하고,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하여는 이들 항목 외에 이전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탐색조사” 항목은 검역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④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사항목은 필요시 농림부장관의 별도지시에 의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조치 등) ①검사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검역원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록 및 보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①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출하농장 및 검사결과를 즉시 FAX 등으로 검역원장 및 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농가를 관할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의 지정과 함께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농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도 해당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도록 하고, 출하제한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함을 통보하고 출하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잔류위반농가현황을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잔류위반농가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관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농가의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농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검사기간 동안 익명 출하방지 등의 감시·감독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계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 투여 후 최소휴약기간 준수
2. 출하 15~30일전 비육후기사료 급여 철저
3.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준수
4.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의뢰

④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잔류위반농가가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농가를 관할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결과 3회 연속 음성으로 해당농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잔류위반농가의 지정 해제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당시의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FAX 등을 이용하여 검역원장, 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및 해당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해당농가에 대하여 규제검사기간을 검사완료일 부터 6개월 연장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72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사항

제11조(검사결과 등의 보고 등) ①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분기 첫 달 20일, 탐색조사 결과는 당해년 12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 하에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검사계획 등 보고) ①검역원장은 다음연도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도축장별·월별·축종별 도축두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잔류물질검사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지원 등

제13조(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①검역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잔류물질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이 잔류물질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검역원장은 축산물검사요원의 잔류분석 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③농림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3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해 잔류물질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지원) 시·도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도별 검사물량 등) 농림부장관은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대상물질 및 각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 검사물량에 대하여 매년 1월중 각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육 잔류물질 검사 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1. 모니터링 검사

가.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1) 시료채취 장소 : 농장

2) 시료채취단위 및 채취(의뢰)량

○소·돼지·양 : 양축농가는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10%이상으로 오줌 5ml 또는 혈액(혈청으로서) 1ml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닭·오리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0.1%이상으로 혈액(혈청으로서) 1ml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별표 2 참조)

※ 출하예정 가축에 대하여 돈방·계군별로 균등하게 시료채취

3)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검사방법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TLC), BmDA법(B. megaterium disc assay), EEC 4-plate법, 효소면역분석법(ELISA), 미생물수용체분석법 또는 형광면역분석법 등 오줌 혹은 혈청 중 항균물질 간이검사에 적합한 방법

○결과판정 : 검사결과와 판정은 제조회사의 결과판정 요령에 따른다. 다만, TLC 법은 형광띠(band)의 위치가 Rf값 0.80~0.95 범위이고 형광강도가 설파메타진을 기준으로 오줌 중 1.3ppm이상이거나 혈청 중 0.4ppm이상일 때, BmDA법은 억제환의 직경이 12mm이상일 때 양성판정

4)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검사결과를 축주에게 신속히 통보할 것. 단, 양성판정시는 최종약품투약일, 투약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휴약기간 준수 후에 출하토록 조치

나.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1)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2) 시료채취단위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소속 축산물검사관(또는 자체검사원)이 월별계획에 따라 가능한 농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1농장 1시료(닭, 오리의 경우 1수)이상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료(근육, 지방, 신장 혹은 간)를 채취

3) 시료채취부위 및 채취량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 검사시료는 근육 100~500g, 기타 농약 검사시료는 지방 10g이상, 호르몬제 검사시

료는 간(소의 경우 비육우) 50g이상을 채취

○닭고기·오리고기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 검사시료는 근육 100~500g, 기타 농약 검사시료는 지방 10g이상 채취

4)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가) 간이정성검사(항생물질, 설파제 및 플루오로퀴놀론계 등)

○EEC 4-plate법 등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서 정한 방법

나) 정밀정량검사(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검사방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방법

○결과판정 :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양성판정

5)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의 경우에는 해당농가에게 정밀정량검사 완료시까지 출하제한을 통보하고,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실시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는 잔류방지 개선대책을 지도하고 6개월간 규제검사 실시

2. 규제검사

가. 일반사항

○잔류위반농가 또는 규제검사대상 가축 여부확인

- 축산물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은 도축

검사 신청시 출하능가를 확인하여 잔류 위반능가 여부확인

- 도축검사시 긴급도살 가축여부,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규제검사대상 가축여부확인

○ 잔류위반능가에서 6개월 이내에 출하한 가축 및 기타 규제대상가축의 경우 축산

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본 규제검사에서 합격된 이후에 실시

○ 항생물질, 설파제 및 플루오로퀴놀론계에 대한

규제검사는 우선 오줌 또는 혈청에서 간이정성검사(BmDA법, TLC법, EEC 4-plate법 등)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일 경우 출고조치 하고, 양성일 경우는 정밀정량검사를 실시. 필요시 오줌 또는 혈청에서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육시료에서 미생물수용체법 등 신속한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규제검사대상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후 정밀정량검사 실시가능

○ 항생물질, 설파제 및 플루오로퀴놀론계 이외의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및 농약의 규제검사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근육, 지방, 간 또는 신장)에서 해당 규제검사대상 검사항목에 대하여 정밀정량검사 실시

나.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다. 시료채취단위

○ 긴급도살 및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모든 해당 가축에서 시료채취

○ 잔류위반능가에서 출하한 가축의 경우 다음과 같이 농장별 출하규모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소·양(염소 포함)		돼 지		닭·오리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5두 이하	2두 이상	40두 이하	2두 이상	1,500수 이하	3수 이상
6~10두	4두	41~80두	4두	1,501~3,000수	5수
11두 이상	5두 이상	81두 이상	5두 이상	3,001수 이상	6수 이상

라. 시료채취부위 및 채취량

1) 항생물질, 설파제 및 플루오로퀴놀론계 등

○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오줌·혈청 포함) : 간이정성검사를 위한 시료는 방광에서 오줌시료 5ml 이상 또는 혈액시료(혈청으로서 1ml 이상)를 채취하고, 정밀정량검사 시료는 근육시료 100~500g 이상을 채취. 다만 화농부위나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당해 부위에서 채취

○ 닭고기·오리고기(혈청 포함) : 간이정성검사를 위한 시료는 혈액시료(혈청으로서 1ml 이상)를 채취하고, 정밀정량검사는 근육시료 100~500g 이상을 채취. 다만 화농부위나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당해 부위에서 채취

2) 항생물질, 설파제 및 플루오로퀴놀론계 이외의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및 농약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 : 합성항균제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 검사시료는 근육 100~500g, 기타 농약 검사시료는 지방 10g 이상, 호르몬제 검사시료는 간(소의 경우 비육우) 50g 이상을 채취. 다만, 이버맥틴 등 가식부위 중 근육에서의 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검사시료는 간 50g 이상을 채취

○닭고기·오리고기 : 합성항균제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 검사시료는 근육 100~500g, 기타 농약 검사시료는 지방 10g 이상을 채취

마.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1) 간이정성검사(항생물질, 설파제 및 플루오로퀴놀론계 등)

○EEC 4-plate법 등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서 정한 방법

2) 정밀정량검사(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검사방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방법

○결과판정 :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양성판정

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도체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동일농장(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나머지 소·돼지·양에 대하여는 모든 도체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에 따라 조치하고, 닭·오리의 경우 다. 시료채취단위의 2배를 적용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검사기관에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잔류원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전량검사 또는 폐기여부 결정. 다만, 잔류위반농가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검사기관은 즉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잔류원인조사를 관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즉시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검사기관으로 통보

사. 위반농가에 대한 조치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여 규제검사 실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2조의6 제3항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검역원고시)에 따라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별표 2]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절차

검사시료 채취·의뢰
(양축농가)



시료검사 접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시료검사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결과통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출하여부 결정
(양축농가)



출하여부 결정
(양축농가)

- ① 출하여정일 3~7일전 시료채취용기(원심분리관 등)에 농장명, 축사번호 및 채취일자를 기입한다.
- ② 시료채취용기에 출하여정축군의 우리당 1마리 이상씩 오줌 또는 혈청시료(닭의 경우 계사당 2수 이상 혈청시료)를 채취한다. 시료채취 후 곧바로 냉장고에 보관한다.
- ③ 채취한 검사시료를 가능한 냉장상태로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생체약물잔류검사를 의뢰한다.
-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담당자는 시료를 접수하고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대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기록한다.
- ⑤ 의뢰받은 검사기관 분석담당자가 검사시료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 ⑥ 검사기관의 장이 농장주에게 의뢰시료의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양성판정시 생체잔류검사일, 최종약품투약일 및 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출하가능시점을 권장·통보한다.
- ⑦ 농장주는 통보받은 생체잔류검사결과에 따라 출하여정일 출하여부를 결정한다(음성시; 출하여정일 출하, 양성시; 약품의 최종투약후 당해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남은 기간만큼 출하연장).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생체잔류검사 의뢰시 양축가의 농장명, 연락처, 의뢰일자, 축종, 의뢰두수, 출하여정일 및 출하여정두수, 축사번호, 투여약품(사료첨가제 포함) 및 투약농도, 최종투약일, 최소휴약기간,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통보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잔류위반농가 원인추적조사에 의한 잔류
원인조사 결과 예

- ① 휴약기간 불준수 :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의 조사 결과 해당 가축에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권장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후 약품의 사용설명서상의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② 투약기록의 불량 : 약품의 사용설명서의 휴약기간을 준수하려 했으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휴약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③ 투약동물의 미격리 또는 미표시 : 약품을 투여 후 다른 축사에 격리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함께 사육·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④ 권장량초과 투약 : 사용설명서나 안전사용기준의 투여권장용량을 초과 투약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⑤ 비육후기(출하용)사료의 미급여 : 비육말기 출하시기에 항생제 등 약제 무첨가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약제가 첨가된 비육사료 등을 그대로 급여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⑥ 미승인 약제 투여 : 클로람페니콜이나 푸라졸리돈 등 식용동물에 금지된 제제나 약품의 사용설명서상 투여대상동물에서 해당 가축이 포함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할 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돼지와 닭에 사용토록 되어있는 약품을 소에 사용한

경우, 착유우나 산란중인 닭에 사용금지하는 약품을 이들 가축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 ⑦ 사료혼합시설 및 기구의 세척불량으로 인한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 배합사료제조회사 또는 자가혼합과정에서 약제첨가사료가 오염되어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⑧ 축사 격리시설 관리 잘못에 따른 다른 축사로 유입 후 약제첨가 사료 급식 : 약제치료군을 별도의 축사로 격리하였으나 투약을 하지 않은 가축이 약제치료군의 축사로 왕래되어 약제첨가사료를 섭취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⑨ 급수라인 관리 잘못으로 약제첨가 축사로부터 물의 유입 : 수용산제제를 음수투여시 급수라인의 관리 잘못으로 출하군에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⑩ 실수에 의한 약제첨가사료의 급여 등